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파일다운받는 방법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릭



원할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원할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원할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원할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수) ~ 1.20.(월)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화)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회원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안내

간편인증 자세히보기

자주묻는 질문

로그인

원하는 로그인방법으로 로그인

성명

홍**

주민등록번호

700000

- 200000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 전체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자세히보기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필수)

자세히보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홈택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0명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제공 조회/취소 이동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세 이상 자녀라도 요건에 따라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올해 많이 변경되는 사항은 FAQ를 참고해 보세요.

연말정산간소화 FAQ

귀속년도

2024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월 해제

클릭①

한번에 조회하기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상세보기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 공개안함 ☐ 공개함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 설정안함 ☐ 설정함

내려받기

인쇄하기

점자받기

클릭②

실버앤티크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조회하기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 해 주세요!

-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 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돼요.
-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올해부터 처음 제공해요
-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외에 제공하지 않아요.
-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는 제공하지 않아요.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PDF가 미검증 표시가 될 경우 꼭 읽어주세요

내려받을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전체 선택

초기화

소득기준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닫기

PDF로 내려받기

파일 다운로드

해당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2024년도자료.pdf

C:\Users\UserK\Downloads

☐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기

취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열기

저장

업체폴더만든후 선생님별로 "간소화PDF"
다른이름저장해서 2월14일(금)까지보내주세요!

실버엔키즈